

# **2012년도 임금협약서**

**2012. 11. 7**

# 2012년도 임금협약서

## 전      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뢰로 조합 활동의 제반 여건을 유지·개선하고, 노동조건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꾀하며,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한 공공·연구기관의 올바른 위상 확립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신의와 성실로써 엄정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우선하며, 조합원과 맺은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한다.  
② 단체협약과 이 협약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원[주] 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이 유 효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종사하는 모든 정규직·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임금의 원칙) ① 진흥원은 임금 및 임금과 관련된 모든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원의 임금을 종전보다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4조 (임금의 정의) 이 협약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다만 연 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은 그 총액을 월할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제5조 (적용기간)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 또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 타결시점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6조 (임금인상) 진흥원은 임금을 전년도 대비하여 총액 대비 3.9% 이내에서 인상하고 세부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 ① 기본연봉은 위 인상분에 대해 직급별 평균금액으로 정액 인상하며, 간부직(G1급)에 대해서는 2011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와 최저등급간 ±1% 내에서 등급별 균등비율로 차등 인상한다.
- ② 성과연봉은 비누적식으로 2011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 한다.

구분	S	A	B	C	D
성과 연봉 차등율	G1	+38%	+10%	0%	-19%
	G2	+16%	+4%	0%	-8%
	G3	+12%	+3%	0%	-6%
	G4a/b	+10%	+2%	0%	-5%
					-10%

### ③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 시간외 근무수당 : 한도를 초과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로 별도시간을 보상하되 세부기준은 별도로 수립, 차년도부터 시행한다.
- 연차휴가 보상수당 : 미사용 2일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총액임금 한도 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지급금 규모는 1인당 연15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2012년도 집행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학자금 지원 : 진흥원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학자금을 2013년 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진흥원 직원 자녀가 국내 소재 중·고에 재학중인 때에는 학자금(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복리후생비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한다.

- 진흥원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진흥원은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 ① 제 세금 및 법령에 정한 사항
- ② 노동조합비
- ③ 사우회 회비
- ④ 노동조합에서 결의된 사항
- 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공제액
- ⑥ 사용자에게 대부 받은 원금 및 이자
- ⑦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합의한 사항

제8조 (직급 초임 기준표 신설 및 적용) 진흥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 초임 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2012년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구분	연차	직급초임 기준금액
G1	1	67,800,000
G2	1	57,000,000
G3	1	44,850,000
G4a	1	34,100,000
G4b	1	26,400,000

### ■ 제도시행

구분	현행	개선(안)
승진	- 대리승진 : + 400만원 - 과/차부장승진 : + 600만원	- 대리승진 : + 400만원 + $\alpha$ - 과/차부장승진 : + 600만원 + $\alpha$

- 직급초임 기준표 작성과 함께 승진 시 임금인상액을 반영하고도 직급초임 기준액 이하일 경우 차액분( $\alpha$ )을 추가로 인상

##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이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

제2조 (협약의 해석과 효력) ① 이 협약의 해석을 위하여 회의록을 두며, 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일방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할 경우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② 이 협약 이전에 기 체결된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협약과 상충·중복되는 부분은 이 협약을 적용하며, 이 협약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해당 지부에 국한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부와 체결한 협약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6조(임금 인상)을 제외한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4조 (협약의 보관)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5조 (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노동조건은 제반 노동 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위의 사실을 상호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2. 11. 7

한국콘텐츠진흥원,

원 장

홍상표 (서명)  
18.11.1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 원 장

이성우 (서명)  
11.11.10

한국콘텐츠진흥원지부장 신화범 (서명)  
11.11.10